

협약서

한국여성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고 한다)과 국립중앙의료원(이하 “의료원”이라고 한다)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- 1-1. 이 협약은 “의료원”이 “재단”에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건강검진 서비스 제공)

- 2-1. “재단”的 검진대상자라 함은 “재단”과 “재단”이 인정하는 여성공익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그리고 그 가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포함)을 말한다.
- 2-2. “의료원”은 “재단”과의 상호 협의 하에 [첨부]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“재단”이 의뢰하는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한다.
- 2-3. “재단”이 의뢰한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결정된 비용을 검진대상자가 검진 당일 직접 “의료원”에게 결제하도록 한다.
- 2-4. <2-2>, <2-3>에 있어 건강검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“재단”과 “의료원”은 상호 협조 한다.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준비 사항의 설명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할 물품의 전달은 “의료원”이 한다.

제 3 조 (책임사항)

- 3-1. “재단” 의뢰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한 건강검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“의료원”에게 있다.
- 3-2. “재단” 의뢰 검진대상자가 검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시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“의료원”에게 있다.

제 4 조 (결과에 대한 통보)

- 4-1. “재단” 의뢰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건강검진 시행 후 검진 결과는 “의료원”이 결과 확인 진료 시에 제공하거나, 필요에 따라서는 “재단” 의뢰 검진대상자에게 “의료원”이 직접 우편 발송으로 결과를 통보한다.

제 5 조 (분쟁 및 관할법원)

- 5-1. 본 협약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본 협약서 상의 문구 해석에 있어 “재단”과 “의료원”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5-2. <5-1>항에 있어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“재단”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 6 조 (손해배상)

- 6-1. “의료원”은 “재단” 또는 “재단” 의뢰 검진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“의료원”的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재단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 그 원인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6-2. 기타 “의료원”은 본 협약 이행에 있어 “재단”的 검진대상자에 대한 제반 개인정보(건강 상태, 검진 내역, 개별 상담내용 포함)가, 어떠한 경우에도 “재단”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,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각종 자료/문서보안 및 전산 상의 보안 등 제반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, “의료원”的 고의/과실 등 귀책으로 상기 사항이 초래될 경우 “의료원”은 그로 인한 관련 당사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협약의 임의양도 등 금지)

- 7-1. “의료원”은 “재단”的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본 건 협약 또는 본 건 협약에 수반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, 이전, 담보제공하거나 기타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8 조 (협약 기간 및 자동 갱신)

- 8-1.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8-2. 본 협약의 만료 1개월 전까지 “의료원” 또는 “재단”이 상대방에게 협약종료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(협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명시적인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) 본 협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단, 협약갱신 시 상호 합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“재단”과 “의료원”은 상기의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하며, 본 협약서 상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검진과 관련한 일반적인 상거래에 따라 행하며 협약의 충실히 이행과 모든 협약사항을 확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가 각각 1부 씩 보관한다.

2016년 8월 22일



국립중앙의료원
National Medical Center

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

원장 안명옥

